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
----------	------

발의연월일 : 2018. 10. 29.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도일용 의원

1. 제안이유

-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

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그 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취지와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집행내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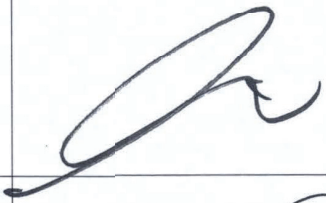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보 경	김보경	
도 일 용	도일용	